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안 번호	6647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2022년 7월 ~ 2024년 9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할당관세 적용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감사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부실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
3. 국고채무부담행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감사

제안이유

1.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시행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할당관세 적용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감사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당해물품의 품목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규칙 제4호에 해당하는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향후 3년간의 수급계획 및 수입가격, 수입실적, 국내도매가격, 국내생산실적 등의 내용이 누락된 보고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함. 특히,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는 전체보고서에 미기재된 상태로 제출됨. 또한, ‘2023년 맥아 TRQ 증량 기재부 제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맥아 생산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 맥아 생산농가 없음’이라고 거짓 명시함.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67호)」에 따라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하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시 심의를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등 일정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된 총 22회의 심의회 심의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함.

이에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할당관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함.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

서울특별시는 한강리버버스 사업의 선박건조계약 체결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이크루즈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면제 대상이 되도록 편법을 사용함. 이크루즈는 해당 선박건조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선정된 후 2개월 후 서울시 SH공사 지분 51%로 하는 (주)한강버스로 합작하여 편법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음. (주)한강버스(SH 51%, 이크루즈 49%)는 은성중공업, 가덕중공업과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됨.

또한,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이크루즈에 대해 선박건조능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업대상자로 선정함. 해당 사업의 최종 집행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이크루즈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였으며, 종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분이 많은 (주)한강버스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을 크게 위반함.

이에 한강리버버스 사업의 지원 주체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사업의 당사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함.

3. 국고채무부담행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감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쌀 시장격리가 결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 자금으로 우선 매입하도록 하고, 이후 분할상환(외상

거래)하고 있음. 이러한 외상거래 방식은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성격을 지니지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지도 않고 있음.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법」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예외가 되는 ‘법률에 따른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기획재정부는 ‘법률에 따른 것’에 「양곡관리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 이에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현행 양곡매입 방식이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명확히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 사후정산 관련 절차와 규모 등이 예산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음. 그러나, 2024년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안이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했음.

이에 국고채무부담행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함.